

증평군 미래비전 정책자문위원 및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2023. 1. 27
[훈령 제1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정의 미래비전 정책발굴 및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 및 정책특별보좌관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자문위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정책발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증평군 미래비전 정책자문위원(이하 “정책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미래비전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의 입안 및 시행과정에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정책자문위원은 군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전략산업 분야
2. 문화·관광·체육 분야
3. 돌봄·복지 분야
4. 환경 분야
5. 농축산, 임업 분야
6. 건설·교통, 도시건축 분야
7. 대외협력 분야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임기)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자문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증평군 미래비전 정책자문위원 및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책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책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정책특별보좌관) ① 군수는 상시적,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특별보좌관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정책자문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정책특별보좌관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되, 정책자문위원 임기 내로 한정한다.

제7조(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정책자문위원 및 정책특별보좌관(이하 “정책자문위원등”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군의 각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하 이 조에서 “부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문 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부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기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정책자문위원등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자문료 등) 군수는 정책자문위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등의 운영, 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